

산재예방요율제

산재예방요율제란?

사업주가 소속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재해예방활동(위험성평가, 사업주교육)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인정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 ('14.1.1.시행)



적용 대상

제조업, 임업,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, 하수도업 중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

※ 일괄적용 사업장의 경우, 각각의 사업개시번호별 상시근로자수의 합이 50명 미만일 경우 가능

적용 방법

①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②사업주교육 인정을 받으면 인하율이 큰 보험료율을 적용하며, 인정 유효기간 동안 산재보험료율 인하

- 위험성평가 인정과 사업주교육 인정을 둘 다 받은 경우 인하율이 더 높은 것으로 적용

산재보험료율 인하율

=

위험성평가인정
20%

또는

사업주교육 인정
10%

위험성평가 인정이란?

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심사원이 심사하여 위험성평가 활동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인정서를 발급하는 것을 의미

인정절차

1



공단
사업 안내

2



공단 일선기관
컨설팅 및 교육 지원(요청 시)

3



사업주
위험성평가(재해예방활동 인정 신청)

4



공단 일선기관
인정심사(현장심사)

5



공단 일선기관
인정심사 위원회 개최

6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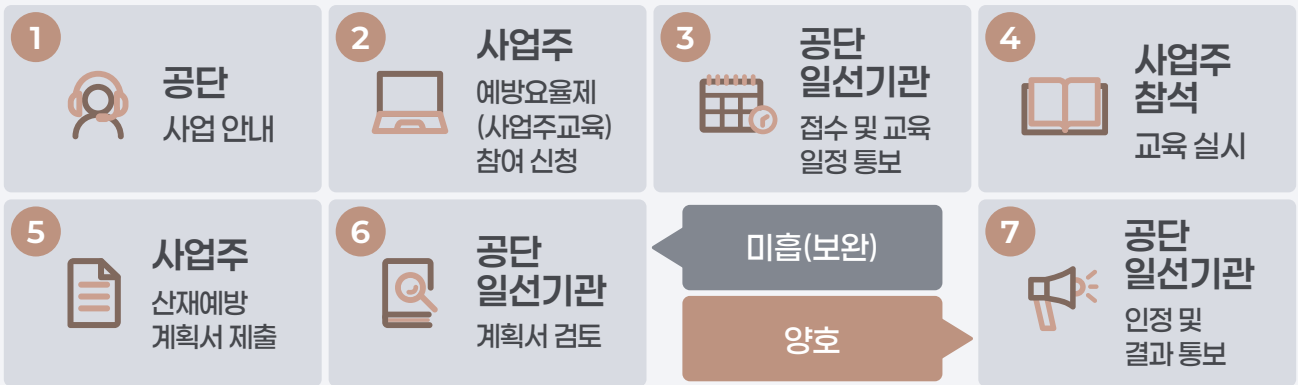
미흡
양호
불인정 및 결과 통보(사업장)
인정 및 결과 통보(사업장, 근로복지공단)



사업주교육 인정이란?

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(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)을 이수하고 사업장의 산재예방계획을 수립·제출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재해예방활동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

인정절차



산재예방요율제 관련 교육 안내

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

교육대상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제조업, 임업,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, 하수도업 사업주	시간·방법 4시간, 집체교육
교육내용 안전의식 제고, 사업주의 산재예방 책임, 사업장 위험성평가, 자체 산재예방계획 수립(산재예방계획서 실습 포함) 등	이수혜택 사업주교육 인정시 산재예방요율제 1년간 10% 감면

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

교육대상 전 업종 사업장의 사업주(공장장, 현장소장 등 포함)	시간·방법 2시간 이상, 집체교육
교육내용 안전경영 의식 개선 관련 내용, 위험성평가 제도 개요 등	이수혜택 위험성평가 인정시 산재예방요율제 3년간 20% 감면

문의처 |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644-2275